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4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11536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1.가.항, 2.가.항, 3.가.항의 각 “2018. 6. 20.”을 “2018. 5. 16.”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6.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8. 6. 20. 접수 제9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6.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7,091,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1,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6.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1,161,1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1,161,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4~16행의 “별지 1목록 중 제1 내지 7번 부동산, 별지 2, 3목록 각 부동산은”을 “별지 1목록 중 제1 내지 6번 부동산, 별지 2, 3목록 각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2행의 “2018. 5. 16.”을 “2018. 5. 16.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다.항(제4면) 이하의 내용을 아래의 것으로 교체한다.

『1) 한편 D의 다른 채권자인 J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8. 8.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목록 중 제1, 2번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2018가단111555호)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19. 1. 23.로 지정하였으나, J이 2019. 1. 17.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변론기일은 추후지정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들이 위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3) 위 소 취하는, J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송 외적으로 피고들이 J에 1,6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2019. 1. 2. 500만 원을, 2019. 1. 17. 나머지 1,180만 원을 각 지급한 데 따른 것이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3행의 “부동산을”을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6행, 제6면 10, 12행의 각 “주식회사”를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B이 망 E의 처로서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기여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생전에 각종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가계를 꾸려온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는 위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B에게 기여분 등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결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기는 하나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공시기능을 인정한 이유는, 법원이 관여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그 취소의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이루어졌고 법원이 공인한 문서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J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은 위 법리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 주문 1.가.항, 2.가.항, 3.가.항의 각 “2018. 6. 20.”은 그 이유에 비추어 “2018. 5.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철, 판사 조장현, 판사 엄지아

제 1 목 록

1. 경상남도 남해군 N 대 479㎡
2. 경상남도 남해군 N W동호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36.36㎡
부속건물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26.45㎡
블럭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26.45㎡
3. 경상남도 남해군 O 도로 47㎡
4. 경상남도 남해군 P 전 261㎡
5. 경상남도 남해군 Q 전 12㎡
6. 경상남도 남해군 R 도로 8㎡
7. 경상남도 남해군 I 입야 3,669㎡ 중 지분 1/2

제 2 목 록

1. 경상남도 남해군 S 답 926㎡
2. 경상남도 남해군 T 답 972㎡
3. 경상남도 남해군 U 답 873㎡ 중 지분 363/873

제 3 목 록

1. 경상남도 남해군 V 전 902㎡, 끝.

1) 2020.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8.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18. 5.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2020.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8.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18. 5.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2020.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8. 6.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8의 기재에 비추어 2018. 5.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